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성재민*

I. 머리말

통계청은 지난 5월 말에 2011년 3월 근로형태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0년대 초반 이후 8월에만 실시되던 근로형태 부가조사는 2007년부터 3월과 8월에 조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5년째 조사된 3월 조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 근로조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7년 3월 이후 비정규직 고용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고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2007년 7월 1일 30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게 되었고, 2008년 7월 1일부터는 100~299인, 2009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을 고용한 전 사업체에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내수침체에 이은 2009년 국제금융위기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초래해 노동시장에 변화를 만들었다.

기간제한이 도입된 지 5년이 되어가며, 차별 처우가 금지된 지도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이 되어가는 지금 시점은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하기에 좋은 시점이다. 국제금융위기와 기간제법의 효과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2010년 경기회복이 되어 지금까지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회복에 맞추어 비정규직 고용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면 국제금융위기와 기간제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ongjm@kli.re.kr).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다. 주로 기술적인(descriptive) 방법으로 어떤 경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부분적으로 간단한 회귀분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시도하겠다. 이하에서는 먼저 규모상의 변화를 본 후 근로조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II. 비정규직 규모 변화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37%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꾸준히 떨어져 2011년 3월 현재 33.8%를 기록하고 있다. <표 1>을 보면 2007년 3월 이후 꾸준히 임금근로자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3월까지 임금근로자수는 1,334천 명이 증가했는데, 정규직은 1,336천 명이 늘었고, 비정규직은 2천 명 감소했다. 2007년 3월과 2011년 3월 두 시점만 보면 임금근로자 순증가분은 전부 정규직 순증가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시기 내내 정규직 증가가 비정규직 증가를 압도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기인 2009년 3월과 고용회복에 들어선 2010년 3월을 비교하면 정규직이 417천 명의 순증가를 보였고, 비정규직은 125천 명의 순증가를 보였다. 2010년 3월과 2011년 3월을 비교하면 정규직이 175천 명, 비정규직이 273천 명 늘어 비정규직의 순증가가 정규직의 순증가보다 많았다.

2007년 3월과 2011년 3월을 비교할 때 정규직 순증가, 비정규직 순감소로 나타난 것은 2008년 3월, 2009년 3월 연속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순감소했기 때문으로, 특히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3월 전년동기대비 순감소 규모가 컸다. 금융위기 영향을 받고 있던 2009년 3월, 정규직은 비정규직과 반대로 전년동기대비 여전히 순증가를 이어가 구조조정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게서 나타났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비정규직의 형태별로 보면, 한시근로는 2007년 3월 이후 감소하다가 2009년 3월 이후 증가하고 있다. 한시근로는 세 집단으로 구별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반복갱신을 통해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반복갱신” 한시근로자, 언제든지 그만두려면 그만두는 조건으로 고용된 등의 이유로 계속 근무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계속근무 기대불가” 한시근로자,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가 그것이다. 이 중 반복갱신 한시근로자의 경우 2007년 3월 547천 명에서 2009년 3월 23천 명까지 줄어들었다가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1년 3월 461천 명이 되었다. 계속근무 기대불가자는 2008년 3월 727천 명으로 급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3월 현재 444천 명을 유지하고 있다. 기간제의 경우 2007년 3월 2,614천 명에서 2008년 3월 2,293천 명으로 감소했다가

2009년 3월 2,560천 명, 2010년 3월 2,389천 명, 2011년 3월 2,465천 명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는 2007년 3월 이후 한 해의 감소도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전형근로는 한시근로와 달리 2008년 3월에도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2009년 3월에는 감소했고, 그 이후로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세부집단별로 규모의 변화를 보면, 파견근로자는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보다 최근인 2010년 3월, 2011년 3월의 규모가 더 크다. 용역은 2011년 3월 612천 명으로 그 이전 정점이었던 2008년 3월 617천 명보다 적다. 특수형태근로는 최근 2년의 고용규모가 그 이전 3년보다 줄어들었다. 가정 내 근로도 규모가 감소한 상태에 있으며, 일일근로의 경우 이전보다 증가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9년 3월 이후 순증가하고 있지만 2011년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2007년 3월보다는 감소한 상태다. 세부 형태별로 보면, 시간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3월 조사 중 가장 비정규직 규모가 컸던 2007년 3월과 비교해 볼 때 2011년 3월 한시근로는 모든 세부 근로형태가 순감소했고, 비전형근로 중 파견, 용역은 순증가,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특수형태근로는 순감소했다.

<표 1> 정규·비정규 유형별 임금근로자

(단위: 천 명, %)

		2004. 8	2005. 8	2006. 8	2007. 3 (A)	2008. 3	2009. 3 (B)	2010. 3 (C)	2011. 3 (D)	증감 D-C	증감 D-B	증감 D-A
임금근로자		14,584	14,968	15,351	15,731	15,993	16,076	16,617	17,065	448	989	1,334
정규직		9,190	9,486	9,894	9,958	10,356	10,702	11,119	11,294	175	592	1,336
비정규직		5,394	5,482	5,457	5,773	5,638	5,373	5,498	5,771	273	398	-2
한 시 근 로	소 계	3,597	3,614	3,626	3,642	3,249	3,179	3,202	3,370	168	191	-272
	계약 반복갱신	580	302	465	547	229	23	326	461	135	438	-86
	계속근무 기대불가	526	585	439	481	727	596	487	444	-43	-152	-37
	기간제	2,491	2,728	2,722	2,614	2,293	2,560	2,389	2,465	76	-95	-149
시간제 근로		1,072	1,044	1,135	1,232	1,301	1,316	1,525	1,532	7	216	300
비 전 형 근 로	소 계	1,948	1,907	1,933	2,244	2,330	2,165	2,178	2,311	133	146	67
	파견	117	118	131	175	172	131	212	214	2	83	39
	용역	413	431	498	584	617	576	550	612	62	36	28
	특수형태근로	711	633	617	643	601	632	589	579	-10	-53	-64
	가정 내 근로	171	141	175	154	151	69	65	89	24	20	-65
	일일근로	666	718	667	915	940	854	856	901	45	47	-14

주: ()안은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2> 사업체 규모별 정규·비정규 유형별 임금근로자

(단위: 천 명)

		2007. 3	2008. 3	'08-'07 증감	2009. 3	'09-'08 증감	2010. 3	'10-'09 증감	2011. 3	'11-'10 증감
임금 근로	전 체	15,731	15,993	(262)	16,076	(83)	16,617	(541)	17,065	(448)
	5인 미만	3,041	3,011	(-30)	2,893	(-118)	3,021	(128)	2,991	(-30)
	5~99인	8,581	8,764	(183)	8,901	(137)	9,239	(338)	9,436	(197)
	100~299인	1,482	1,485	(3)	1,502	(17)	1,547	(45)	1,680	(133)
	300인 이상	2,627	2,734	(107)	2,779	(45)	2,810	(31)	2,957	(147)
정규직	전 체	9,958	10,356	(398)	10,702	(346)	11,119	(417)	11,294	(175)
	5인 미만	1,657	1,627	(-30)	1,656	(29)	1,762	(106)	1,727	(-35)
	5~99인	5,664	5,918	(254)	6,072	(154)	6,312	(240)	6,420	(108)
	100~299인	1,064	1,139	(75)	1,186	(47)	1,247	(61)	1,327	(80)
	300인 이상	1,574	1,671	(97)	1,788	(117)	1,797	(9)	1,820	(23)
비정 규직	전 체	5,773	5,638	(-135)	5,373	(-265)	5,498	(125)	5,771	(273)
	5인 미만	1,385	1,384	(-1)	1,237	(-147)	1,259	(22)	1,264	(5)
	5~99인	2,917	2,846	(-71)	2,830	(-16)	2,927	(97)	3,016	(89)
	100~299인	418	345	(-73)	316	(-29)	300	(-16)	353	(53)
	300인 이상	1,053	1,062	(9)	991	(-71)	1,012	(21)	1,138	(126)
한시 근로	전 체	3,642	3,249	(-393)	3,179	(-70)	3,202	(23)	3,370	(168)
	5인 미만	651	616	(-35)	529	(-87)	450	(-79)	427	(-23)
	5~99인	1,865	1,630	(-235)	1,653	(23)	1,741	(88)	1,779	(38)
	100~299인	359	289	(-70)	268	(-21)	250	(-18)	311	(61)
	300인 이상	767	714	(-53)	728	(14)	761	(33)	853	(92)
반복 갱신	전 체	547	229	(-318)	23	(-206)	326	(303)	461	(135)
	5인 미만	58	31	(-27)	6	(-25)	38	(32)	32	(-6)
	5~99인	301	131	(-170)	11	(-120)	176	(165)	263	(87)
	100~299인	71	22	(-49)	1	(-21)	42	(41)	65	(23)
	300인 이상	118	45	(-73)	5	(-40)	70	(65)	101	(31)
계속고 용기대 불가	전 체	481	727	(246)	596	(-131)	487	(-109)	444	(-43)
	5인 미만	187	291	(104)	254	(-37)	199	(-55)	161	(-38)
	5~99인	244	360	(116)	277	(-83)	235	(-42)	232	(-3)
	100~299인	19	21	(2)	20	(-1)	16	(-4)	14	(-2)
	300인 이상	30	54	(24)	46	(-8)	36	(-10)	38	(2)
기간제	전 체	2,614	2,293	(-321)	2,560	(267)	2,389	(-171)	2,465	(76)
	5인 미만	406	295	(-111)	269	(-26)	213	(-56)	234	(21)
	5~99인	1,320	1,138	(-182)	1,365	(227)	1,330	(-35)	1,285	(-45)
	100~299인	269	246	(-23)	248	(2)	192	(-56)	233	(41)
	300인 이상	619	615	(-4)	678	(63)	654	(-24)	713	(59)
시간제	전 체	1,232	1,301	(69)	1,316	(15)	1,525	(209)	1,532	(7)
	5인 미만	548	577	(29)	575	(-2)	642	(67)	640	(-2)
	5~99인	561	591	(30)	618	(27)	735	(117)	724	(-11)
	100~299인	46	44	(-2)	31	(-13)	33	(2)	40	(7)
	300인 이상	77	88	(11)	92	(4)	114	(22)	128	(14)
비전형	전 체	2,244	2,330	(86)	2,165	(-165)	2,178	(13)	2,311	(133)
	5인 미만	601	553	(-48)	484	(-69)	509	(25)	552	(43)
	5~99인	964	1,053	(89)	1,019	(-34)	964	(-55)	1,014	(50)
	100~299인	58	50	(-8)	47	(-3)	47	(0)	38	(-9)
	300인 이상	621	675	(54)	615	(-60)	659	(44)	707	(48)

주: 300인 이상은 공공부문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2>는 근로형태별 규모를 사업체규모별로 요약하고 있다. 정규직은 2007년 → 2008년 시기 5인 미만에서만 줄고 나머지에선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같은 시기 300인 이상에서 제외하고 감소했다. 2008년 → 2009년 시기에는 정규직은 모든 규모에서 증가했으나 비정규직은 모든 규모에서 감소했다.

2009년 → 2010년 사이에는 정규직은 모든 규모에서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00~299인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 이때는 경기회복이 시작되는 시기로 300인 이상을 제외하고는 정규직이 모든 규모에서 고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300인 이상의 경우만 정규직 순증가는 9천 명인데 반해 비정규직 순증가는 21천 명으로 비정규직 순증가가 많았다. 2010년 → 2011년 시기 역시 경기회복으로 인한 고용팽창이 지속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순증가가 더 컸다. 정규직은 5인 미만을 제외하고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은 모든 규모에서 증가했는데, 5~99인, 100~299인은 정규직 증가가 비정규직 증가보다 많았지만, 300인 이상에서는 정규직 23천 명, 비정규직 126천 명으로 비정규직이 훨씬 많이 증가했다. 300인 이상의 경우 그보다 작은 사업체들과는 달리 고용이 회복되는 2년 동안 계속 비정규직 증가가 정규직 증가를 압도하고 있는 셈이다.

일정 시점에서의 고용량은 해당 근로형태로의 입직자수(이직자수)와 근속기간으로 분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량이 많다고 꼭 입직자수도 많은 것은 아니며, 입직자수가 적어도 근속기간이 길다면 총 고용량은 많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용규모만이 아니라 입직자(이직자)수와 근속기간도 함께 분석해야만 고용량의 변화가 주는 함의를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표 3> 정규·비정규 유형별 평균근속기간

(단위:개월)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11. 3
정규직		70.7	72.8	76.9	76.7	79.4
비정규직		25.7	25.8	23.2	23.3	26.3
한시 근로	한시근로 전체	30.7	30.4	26.4	26.9	31.3
	반복갱신	57.7	69.6	54.1	60.1	59.9
	갱신불가	13.0	17.3	15.7	14.1	14.5
	기간제	28.4	30.6	28.7	24.9	29.0
시간제		10.6	13.4	11.4	12.1	14.1
비전형	비전형 전체	18.9	22.8	22.0	22.6	23.1
	파견	23.0	32.7	28.6	29.2	29.4
	용역	24.9	26.2	27.3	28.5	29.9
	특수고용	32.3	41.7	41.4	43.7	46.3
	가정 내 근로	11.1	29.3	15.4	14.3	17.3
	일일근로	2.2	2.6	1.8	1.4	0.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3>은 평균근속기간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정규직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와중에 있었던 2009년 3월의 평균근속기간이 그 이전보다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규채용 억제를 통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했다면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2009년 3월의 평균근속기간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정규직과 반대로 기존 고용된 사람을 구조조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즉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완충장치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한시근로의 경우 갱신불가 집단과 기간제는 2010년 3월까지 평균근속기간이 감소했다가 2011년 3월에야 증가로 돌아섰다. 시간제와 비전형의 경우 가정 내 근로와 일일근로를 제외하면 2009년 3월에만 평균근속기간이 감소하고 그 이후로는 증가하고 있다.

<표 4>는 신규입직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지난주 일한 직장 고용시점 정보를 이용해 고용된 지 3개월 미만인 사람의 규모를 근로형태별로 구분해 추산한 것이다. 이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 신규입직자 규모가 내수 침체, 금융위기에 있던 2008년 8월과 2009년 3월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했고, 2010년의 급증 이후 다시 2011년 3월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추이로 보면 대체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규입직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비정규직도 추이로 볼 때 신규입직규모가 줄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1]은 선형 추세선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신규입직이 증가추세를 갖는지 추정해 보았는데 둘 다 양(+)의 값을 보였다. 정규직의 경우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도 1% 수준에서 유의했지만, 비정규직은 유의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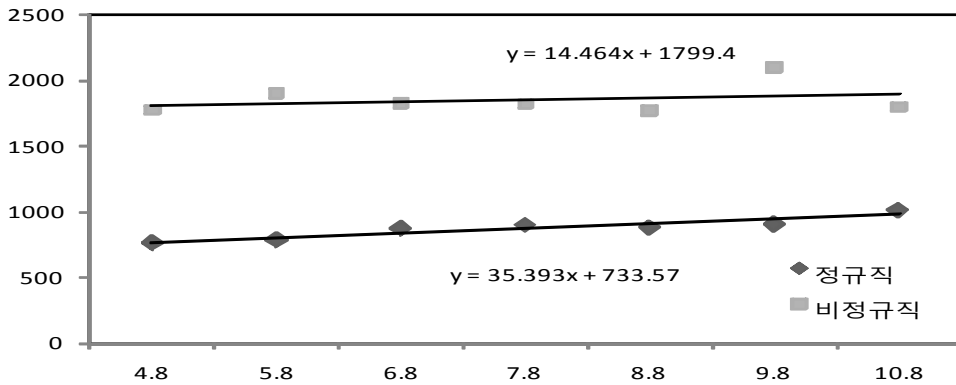
<표 4> 근로형태별 신규입직자수(고용된 지 3개월 미만인 사람의 숫자)

(단위: 천 명)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근로 전체
2004. 8	765	1,777	993
2005. 8	786	1,904	1,090
2006. 8	874	1,827	1,019
2007. 3	924	2,063	976
2007. 8	901	1,823	826
2008. 3	943	1,985	840
2008. 8	881	1,769	750
2009. 3	886	2,028	928
2009. 8	906	2,101	1,017
2010. 3	1,056	2,093	954
2010. 8	1,013	1,800	640
2011. 3	994	2,110	89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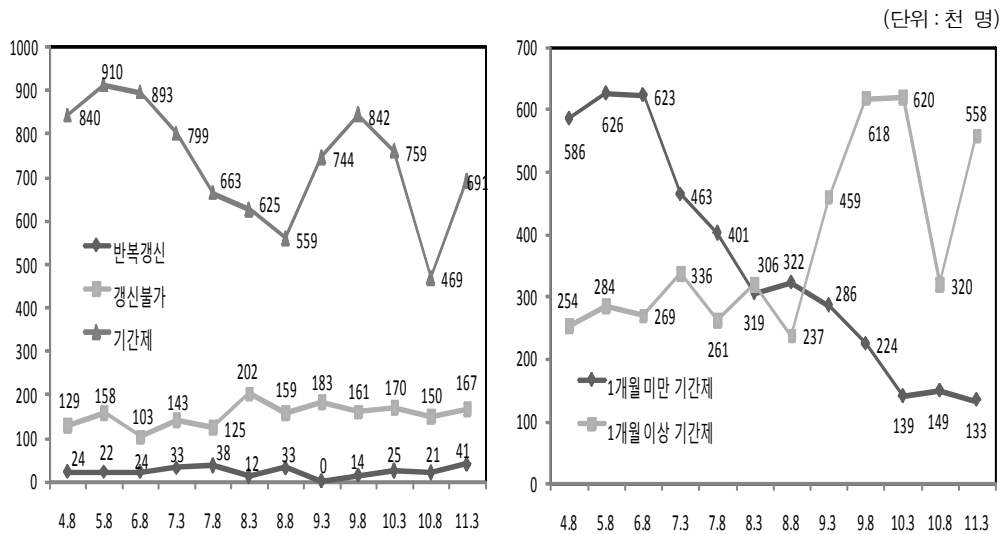
[그림 1] 정규직·비정규직 신규입직자수(고용된 지 3개월 미만인 사람의 숫자) 추이



주: 가로축은 시점을 의미(4.8=2004년 8월)하며 세로축은 인원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다시 <표 4>를 보면, 비정규직은 2008년 8월에 감소했을 뿐 2009년 3월은 금융위기임에도 전년동기대비 정규직과 반대로 증가했으며, 2010년 8월에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했지만 2011년 3월은 다시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금융위기시에 정규직은 신규채용이 억제된 반면, 비정규직은 신규채용이 억제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근속기간이 반대로 움직인 것과 연관시켜 보면

[그림 2] 한시근로 유형별 신규입직자 추이



주: 가로축은 시점을 의미하며(4.8=2004년 8월), 세로축은 인원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경기침체시 정규직은 유입과 유출이 모두 감소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유입과 유출이 모두 증가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그림 2]는 한시근로 유형별로 신규입직자수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보면 기간제 입직규모가 줄어든 반면 갱신기대가 없는 비기간제 한시근로는 소폭이긴 하지만 2007년 8월 이전보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2년 기간제한이 있을 경우 아무래도 기간제 채용이 줄고, 채용할 경우 갱신기대가 없는 형식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응답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반복갱신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이론적 추정일 뿐이다.¹⁾ 지난 2년간은 반복갱신도 꾸준히 증가해 입직규모가 과거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그림 2]의 오른쪽 그림을 보면 기간제를 계약기간 기준으로 구분해 신규입직규모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1개월 미만 고용계약을 한 기간제가 추세적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전체 기간제 신규입직자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한 기간제의 신규입직은 오히려 규모가 커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1개월 미만 초단기 기

<표 5>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별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전 체
2004. 8	813 (32.6)	684 (27.4)	641 (25.7)	241 (9.7)	113 (4.5)	2,491
2005. 8	824 (30.2)	724 (26.6)	791 (29.0)	262 (9.6)	127 (4.6)	2,728
2006. 8	803 (29.5)	747 (27.4)	772 (28.4)	259 (9.5)	140 (5.2)	2,722
2007. 3	615 (23.5)	722 (27.6)	850 (32.5)	286 (11.0)	141 (5.4)	2,614
2007. 8	512 (20.2)	750 (29.6)	851 (33.6)	230 (9.1)	189 (7.5)	2,531
2008. 3	394 (17.2)	698 (30.4)	799 (34.9)	351 (15.3)	51 (2.2)	2,293
2008. 8	400 (16.9)	765 (32.3)	824 (34.8)	318 (13.4)	59 (2.5)	2,365
2009. 3	350 (13.7)	867 (33.9)	942 (36.8)	320 (12.5)	81 (3.2)	2,560
2009. 8	255 (9.0)	1,186 (42.1)	1,086 (38.6)	256 (9.1)	33 (1.2)	2,815
2010. 3	154 (6.4)	804 (33.6)	1,171 (49.0)	227 (9.5)	34 (1.4)	2,389
2010. 8	160 (6.4)	856 (34.3)	1,231 (49.3)	215 (8.6)	33 (1.3)	2,494
2011. 3	151 (6.1)	775 (31.4)	1,260 (51.1)	239 (9.7)	41 (1.6)	2,465

주: ()안은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의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1) 기간제법은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현상이 법 때문이라면 5인 미만은 다른 추이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표 2>를 보면 5인 미만도 5인 이상과 마찬가지로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반복갱신 감소, 계약의 갱신 기대불가 집단이 증가했다. 그 이후에도 5인 미만은 5인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때문에 이 현상을 전적으로 법 변화에 귀속시키기는 어렵다.

간제가 1개월 이상 기간제로 대체된 것인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2년 기간제 한으로 인해 기간제 계약이 줄어든 것이라면 둘 다 줄거나 초단기 계약은 증가하고 장기 계약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초단기 계약은 감소하고 이보다 긴 계약은 신규입직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2년 기간제한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표 5>를 보면 신규입직규모만이 아니라 총규모도 1개월 미만 고용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 숫자와 비중이 대폭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은 절대다수가 5인 미만 및 5인 이상 99인 미만 사업체에 몰려 있는데,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99인 미만 사업체뿐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대폭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초단기 기간제 감소가 2007~2011년 사이 기간제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기간제법의 계약기간 제한 조치의 효과는 장기계약을 맺은 기간제 비중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를 보면 기간제 근로 중 3년을 초과하는 고용계약을 맺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007년 8월 189천 명을 정점으로 그 이후 급격히 떨어졌다. 2008년 8월에는 59천 명으로 130천 명이 감소한 데 이어 2009년 8월 33천 명, 2010년 8월에도 33천 명, 2011년 3월에는 41천 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3년을 초과할 정도의 장기계약이면 정규직으로 쓰라는 것이 기간제법의 취지이므로 이는 취지에 부합하는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년 초과 3년 이하의 고용계약을 한 사람들의 숫자도 다소 줄었다. 특징적인 것은 3년 초과 계약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2007년 8월과 2008년 3월 사이였는데, 1년 초과 3년 이하 계약자가 급격히 늘는 것도 2007년 8월과 2008년 3월 사이였다는 점이다. 아마도 기간제법상 2년 기간 제한 때문에 계약을 갈아타는 등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제 근로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는 계약기간별로 볼 경우 1년 계약제가 규모와 비중 양 면에서 모두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06년 8월 1년 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28.4%였지만, 2011년 3월에는 전체 기간제 중 절반이 넘는 51.1%가 1년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 기간제 시장이 초단기와 장기 계약제가 사라지고 1년 기간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의 변화를 겪고 있다.

한시근로에서 비정규직 신규입직규모가 등락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비정규직의 입직규모는 줄지 않았다. <표 6>을 보면 시간제 및 일일근로 신규입직규모의 추세적 증가가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기간제한이 일종의 풍선효과를 낳아 파견, 용역 고용 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파견·용역에서 신규입직규모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특수고용과 가정 내 근로의 경우는 신규입직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표 6〉 시간제 및 비전형근로 형태별 신규입직자수(고용된 지 3개월 미만인 사람의 숫자)

(단위: 천 명)

	시간제	비전형근로					
		비전형 계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2004. 8	503	809	20	98	130	73	594
2005. 8	494	844	24	113	102	64	637
2006. 8	516	828	25	117	120	64	607
2007. 3	651	1,076	52	149	153	87	829
2007. 8	527	953	42	128	113	57	733
2008. 3	623	1,066	25	153	103	62	847
2008. 8	538	932	29	138	89	34	738
2009. 3	670	1,012	26	115	127	37	787
2009. 8	614	1,021	29	129	95	52	817
2010. 3	780	1,005	55	119	73	40	794
2010. 8	615	1,001	36	98	70	37	809
2011. 3	768	1,077	46	133	69	49	8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지금까지의 분석을 정리하면, 비정규직 전체의 고용비중은 2007년보다 감소했지만 신규입직규모는 2007년 이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세부 형태별로 보면 1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 3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 특수고용, 가내근로의 감소로 비정규직 전체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시간제, 일일근로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도 증가했다. 파견도 줄지 않았거나 약간 증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가능하다.

정규직은 꾸준히 증가 중이다. 총규모, 신규입직규모 모두 그렇다. 비정규직의 신규입직규모는 2007년 또는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총규모 감소와 달리 감소하지 않았거나 약간 늘었지만, 근속이 짧은 일일근로, 시간제 등의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이들 집단은 신규 채용이 활발한 만큼 이직도 많을 것이고 근속도 짧아 총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한시적 근로자 집단은 신규입직규모가 줄었는데 1개월 미만 초단기 기간제 감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정규직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의 변화에서 기간제법의 효과는 주로 3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는 장기 기간제 감소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기 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원래부터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전체적인 비정규직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변화이다(가장 규모가 컸던 2007년 8월에 비해 2010년 8월 약 156천 명 감소). 기간제법이 시작된 직후 반복갱신 한시

근로자의 일시적 감소 및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한시근로자의 급증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기간제한 예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같은 변화가 나타나 이를 전적으로 기간제법 때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또한, 그 이후 원래 규모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기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²⁾ 기간제 규모변화의 큰 원인은 1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 감소에 있는데 이 현상과 2년 기간제한 간의 연관관계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들은 2004년 8월에 비해 2010년 8월 약 650천 명 정도가 감소했다. 이 외에는 일일근로와 시간제에서 발생한 규모 증가인데, 시간제는 이전부터 증가하고 있었고, 일일근로는 기간제법과 직접 연관을 찾기는 어려운 집단이다. 파견, 용역에서 변화가 있긴 하지만 몇 만 명 수준의 변화여서 이것이 기간제법에 의한 대체효과인지는 식별하기 어렵다.

Ⅲ. 비정규직 임금 변화

<표 7>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2007년 3월 이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³⁾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고 볼 때 비정규직 형태별로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였다. 비정규직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2007년 3월 정규직 평균임금의 64.2%였는데, 이는 2008년 3월 60.4%로 떨어졌고, 2009년 3월에는 56.9%, 2010년 3월에는 54.7%를 기록했다. 2011년 3월에야 57.3%로 상승하였다. 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상대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다가 2011년 3월에 와서야 소폭 감소했다는 의미다.

세부 비정규직 형태별로 보면 모두 이 추이를 따르고 있지는 않다. 시간제 근로자 정도만이 이렇게 움직였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른 추이를 보였다. 그렇지만, 대체로 2007년 3월에 비해 2010년 3월까지의 상대임금격차가 벌어졌고, 2011년 3월에는 2010년 3월에 비해 격차가 약간 축소되었다.

<표 7>은 개인 특성이 고려된 상대임금은 아니다. <표 8>은 성(gender), 연령,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과거에 비해 2011년 3월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회귀식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하는 월임금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설명변수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평소

2) 유경준·강창희(2009)는 회귀불연속 방법을 사용한 평가연구에서 단기효과는 있지만 그 이상의 효과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남재량·박기성(2010)도 회귀불연속 방법을 활용해 단기효과를 넘어서는 음(-)의 효과가 있다고 상충되는 결론을 내렸다.

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지난 3개월 월평균임금 항목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표 7> 정규직=100일 때 비정규직 형태별 상대월임금

(단위: %)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11. 3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64.2	60.4	56.9	54.7	57.3
한시 근로	소 계	72.6	68.5	64.8	61.9	65.5
	반복갱신	97.0	93.0	51.7	95.1	96.9
	갱신불가	48.4	48.5	48.1	46.7	47.9
	기간제	72.0	72.4	68.8	60.5	62.8
시간제		27.3	26.5	25.7	24.2	24.8
비전형	소 계	54.8	56.6	52.2	53.3	53.5
	파견	66.8	70.4	66.1	60.8	61.8
	용역	51.0	54.3	49.9	50.7	50.7
	특수고용	68.6	77.1	67.2	70.3	73.7
	가정 내 근로	30.0	34.7	25.5	18.0	31.3
	일일근로	45.0	42.8	40.0	41.3	4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근로시간, 2011년 3월 연도더미(dummy variable), 비정규직 여부, 2011년 3월 연도더미와 비정규직 여부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을 활용하였다. 비교가 되는 두 개 연도씩 원자료를 합쳐서 추정하였다.

아래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은 과거 해당 시점보다 2011년 3월에 정규-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2011년 3월 연도더미와 비정규직 여부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이다. 이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라면 과거에 비해 현재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라면 과거에 비해 현재 임금격차가 축소된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임금격차에서 변화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2007년 3월과 2011년 3월을 비교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격차 증대가 관찰된다. 정규-비정규간 임금격차는 8.5% 더 벌어졌다. 세부형태로 보면 한시근로, 시간제에서 유의한 임금격차 확대가 있었고, 비전형근로에서는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임금격차 확대는 없었다. 2008년 3월과 비교하면 역시 2011년 3월에 더 임금격차가 벌어졌다. 세부형태별로 보면 시간제> 비전형> 한시근로 순으로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2009년 3월과 비교해 보면 시간제를 제외하곤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격차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0년 3월과 비교할 경우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격차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임금격차에서 통계적 관점에서 볼 때 유의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은 셈이나,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7년이나 2008년에 비해서는 정규-비정규간 임금격차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금융위기가 정규-비정규 임금격차 확대에서 역할을 했음을 추측케 하는 결과이다.

<표 8> 개인 특성을 감안한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 변화

	비정규직 전체		한시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 근로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2007년 3월과 비교한 2011년 3월 임금격차 변화	-0.085	0.000	-0.065	0.000	-0.021	0.249	-0.049	0.055
2008년 3월과 비교한 2011년 3월 임금격차 변화	-0.064	0.000	-0.046	0.001	-0.060	0.000	-0.126	0.000
2009년 3월과 비교한 2011년 3월 임금격차 변화	-0.013	0.266	0.001	0.946	-0.001	0.955	-0.059	0.015
2010년 3월과 비교한 2011년 3월 임금격차 변화	0.003	0.828	0.020	0.157	-0.013	0.473	-0.029	0.22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도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으므로,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격차가 줄어들었을 것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7월부터 300인 이상, 2008년 7월부터 100~299인, 2009년 7월부터 5인 이상 전체에 차별시정조치가 확대 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체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임금격차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격차 축소가 발견된다면 차별시정조치가 평균적인 격차에 영향을 줄 만큼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는 실제 차별시정조치가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보기 위해 종속변수로는 로그임금, 설명변수로 성, 연령, 교육수준, 근로시간, 산업대분류, 직업대분류를 통제한 회귀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 7월부터 300인 이상에 적용되었으므로 2007년 3월과 2008년 3월의 임금격차 변화를 비교한 것이 첫째 행에 나온 결과이며, 단기효과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2007년 3월과 2009년 3월의 임금격차 변화를 비교한 것이 둘째 행에 나온 결과이다. 법이 제정된 것은 2006년 말이었고, 2006년 내내 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었으므로 기업에서 미리미리 대응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2006년 8월의 임금격차와 법이 막 시행된 2007년 8월의 임금격차를 비교한 것이 셋째 행, 2006년 8월과 중기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2008년 8월을 비교한 것이 넷째 행에 나와 있다. 100~299인은 2008년 7월부터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논리를 적용해 시기만 달리하여 차례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5~99인도 마찬가지로 논리가 적용된 결과이다.

<표 9>에 보고한 결과는 연도변수와 비정규직 여부 변수를 곱한 교호항(interaction term)의 회귀계수 추정치와 p값이다. 이것이 유의하게 (+)라면 격차가 감소했다는 것을, 유의하게 (-)라면 격차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격차가 증가했다면 차별시정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라면 차별시정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4) 전반적으로 100~299인의 2007년 8월 → 2008년 8월을 제외하면 (-)가 대부분이고,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인 경우가 많아 차별시정 조치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앞서 <표 8>에서 지적했듯이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정규-비정규간 임금격차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표 9>를 보면 다른 연도 비교와는 달리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한 경우 (+)로 나타나 격차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지만, <표 9>가 엄밀한 비교집단 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07년 이후 임금격차 변화에서 경기효과가 제도효과를 넘어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보다 분명한 결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9> 개인 특성을 감안한 정규·비정규직간 형태별 임금격차 변화

		한시근로 전체		기간제		비전형		시간제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300인 이상	2007. 3 → 2008. 3	-0.122	0.001	-0.109	0.011	-0.215	0.031	-0.156	0.234
	2007. 3 → 2009. 3	-0.140	0.000	-0.110	0.009	-0.099	0.323	-0.052	0.706
	2006. 8 → 2007. 8	-0.064	0.106	-0.117	0.007	-0.185	0.044	-0.178	0.187
	2006. 8 → 2008. 8	-0.112	0.005	-0.122	0.005	-0.222	0.037	-0.203	0.150
100 ~ 299인	2008. 3 → 2009. 3	-0.007	0.853	-0.009	0.820	0.002	0.984	0.084	0.543
	2008. 3 → 2010. 3	-0.047	0.163	-0.101	0.007	-0.086	0.294	-0.064	0.610
	2007. 8 → 2008. 8	0.009	0.787	0.029	0.446	0.019	0.769	0.039	0.757
	2007. 8 → 2009. 8	-0.103	0.004	-0.091	0.024	-0.014	0.843	-0.173	0.199
5 ~ 99인	2009. 3 → 2010. 3	0.007	0.636	-0.020	0.203	0.015	0.387	-0.037	0.202
	2009. 3 → 2011. 3	0.002	0.895	-0.032	0.042	-0.008	0.651	-0.036	0.235
	2008. 8 → 2009. 8	-0.054	0.000	-0.049	0.001	-0.015	0.332	-0.099	0.000
	2008. 8 → 2010. 8	-0.066	0.000	-0.083	0.000	-0.019	0.250	-0.117	0.000

- 4) 만약 차별시정이 정규직의 임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임금만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작동했다면 이 교호항은 평가연구에서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이라 불리는 항목이 되어서 차별시정의 효과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이지만, 정규직의 임금도 변화시킨 경우도 존재할 것이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 등으로 전환시켜 경제활동인구조조사상으로는 정규직으로 분류되도록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한 곳도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2007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3월에 비해 약 3%p 감소했지만, 비정규직으로의 신규입직은 감소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총량은 신규입직, 이직, 평균근속기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중 평균근속기간은 2007년 3월보다 감소하였다. 이직은 경제활동인구조사로는 직접 관찰되지 않으므로 불완전한 결론밖에는 얻을 수 없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한편에서 비정규직 구조조정이 증가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얻으려는 구직행렬이 길게 이어지면서 비정규직으로의 신규채용이 늘어나 비정규직 평균근속기간이 줄어 2009년 3월 비정규직 총량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같은 심각한 경기불황이 오면 구조조정이 비정규직에 집중되면서 비정규직의 평균근속기간이 줄어들고 총량도 줄어들지만 신규입직은 구직대기행렬이 길어지면서 노동공급요인에 의해 평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다. 이직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2009년 3월 비정규직 규모가 다른 해에 비해 급감한 이후 2010년 3월, 2011년 3월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확연히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평균근속기간의 변화를 보면 2010년 3월까지는 별 변화가 없다가 2011년 3월에야 증가하고 있다. 총량기준으로 볼 때 2010년 초의 경기회복에서는 주로 정규직이 많이 늘었고, 2011년 초 경기회복에서는 주로 비정규직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정규직 채용도 활발해지면서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도 다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이직행렬이 활발하게 변하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다. 입직과 이직이 모두 활발하면 평균근속기간은 증가하지 않거나 짧아질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이직을 알 수 없으므로 추측에 불과하지만, 2009년 3월에는 구조조정이 활발해 평균근속기간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0년 3월에는 자발적 이직이 활발해야 비정규직 신규입직이나 평균근속기간이 동일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유사하게 유지되는 현상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3월에는 평균근속기간이 정규직처럼 약 3개월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위기 이후 요동친 비정규직 고용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입직은 활발한 상태에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비정규직의 이직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당분간 비정규직 고용총량은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기간제법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세부형태별로 보았을 때 기간제법의 직접적인 영향이라 판단되는 규모변화는 크지 않으며,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임금격차는 2007년이나 2008년 3월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확대는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과 2010년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얻으려는 노동공급증대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고,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온 전반적인 임금불평등 증대현상의 결과일 수도 있다. 다만, 2010년 3월에 비해서는 2011년 3월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로 바뀌었다는 점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확대되었던 격차가 다시 노동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춤하고 있다는 추측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3월과 2011년 3월 사이 비정규 노동시장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기간제 노동 시장이 1년 계약제 위주로 재편되면서 초단기 계약제가 급감하고 있다. 2년 기간 제한의 영향으로 3년 이상 초장기 계약제가 감소했다. 시간제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는 감소 중이다. 가정 내 근로자도 줄었다. 파견과 용역은 2007년 이전에 비해 다소 늘긴 했지만 규모는 크지 않다. 이상의 현상이 향후 지속될지 판단하려면 개별 근로형태별 증감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후속연구들이 요청된다. **KL**

<참고문헌>

- 남재량박기성(2010),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 『노동정책연구』, 10(4), 한국노동연구원.
- 유경준강창희(2009),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분석」, 『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이병화·정성미(2008), 『'08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